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100387 절도, 절도미수
피 고 인 A
검 사 나민영(기소), 도 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현근(국선)
판 결 선 고 2026.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6. 3. 23. 02:05경 대구 수성구 B건물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파우치 안 지갑에서 현금 약 3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6. 3. 23. 03:41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조수석 문손잡이를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6. 3. 23. 03: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맥스크루즈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6. 3. 23. 03:5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4 생략) GV80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avi

1.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 범행 장면.mp4, (차량번호 3 생략) 맥스크루즈 차량 범행 장면.mp4, (차량번호 4 생략) GV80 차량 범행 장면.mp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3건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명환 _____